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보

제850호 2023. 6. 7.(수)

선 기관의 장 람

공 고

- 의령군 공고 제2023-746호 「의령군 군립화장장 건립부지」모집 공고 ………… 4
-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3-25호
 - 「의령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……… 12

■발행 : 의령군 ■편집 : 기획예산담당관(☎ 055-570-2740, 행정2740 / FAX 055-570-2709)

의령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시설:공공청사) 결정(변경)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(안)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

의령군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「농지법」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(안)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·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제출 기한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6월 1일

의 령 군



1. 건 명: 의령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시설:공공청사) 결정(변경)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(안)

2. 열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3. 열람장소 :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

4. 열람내용

가. 의령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: 사업계획서 참조

나.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(안)

○ 위 치 : 경상남도 의령군 무전리 156번지 일원

○ 해제면적 : 농업진흥구역 28,280m²

○ 해제사유 :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이전 위한 공공청사 신설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

5. 관계도서 : 게재생략(열람장소에 비치)

6. 의견제출 : 열람기간 만료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서(열람장소에 비치) 제출

7.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(☎055-570-4112) 또는 의령군 도시재생과(☎055-570-350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	의 견 제 출 서						
사 업 명	의령군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이전						
위 치	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무전리 156번지 일원						
사업시행자	의령군수						
의견 제출자	성 명 연락처						
러신 세발자	주 소						
제출의견	● 토지소재지:						
「농지법」 7 제출합니다.	세3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						
	2023년 월 일						
	제출자 (서명 또는 인)						
	의령군수 귀하						

의령군 공고 제2023-746호

「의령군 군립화장장 건립부지」모집 공고

장사문화 변화에 따른 군민의 화장수요 증가에 부응하고, 관외 화장장 이용에 따른 군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의령군 군립화장장을 건립하고자 부지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.

2023. 6. 7.

의 령 군 수

1. 공 고 명:「의령군 군립화장장 건립부지」모집

2. 공모내용

○ 공모(신청)기간 : 2023. 6. 7. ~ 2023. 7. 26.(50일간)

O 공모지역: 의령군 관내

O 부지면적 : 15,000㎡ 내외

- O 신청자격
 - 공고일 현재 건립후보지 소재 행정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수의 60% 이상 동의(세대주 또는 세대원)를 받은 개인 또는 마을·법인·단체 대표
 - * 건립후보지와 가장 가까운 행정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수의 60% 이상 동의(세대주 또는 세대원)를 받은 경우도 가능
- O 신청방법
 - 신청서에 주민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읍·면사무소에 제출
 - 접수처 : 읍·면사무소(건립후보지 신청지역) → 군청 주민행복과
 - * 서식은 군 홈페이지 공고/고시란에서 다운받아 사용 또는 읍·면사무소 비치

3. 사업개요

O 시행기관 : 의령군

O 사업기간 : 2023년 1월 ~ 2026년 3월

O 시설규모

- 부지 15,000㎡ 내외, 건축 3,000㎡

- 주요시설 : 화장로 3기, 유족대기실, 휴게실, 주차장 등

※ 시설규모는 추진과정(선정부지, 실시설계 등)에서 변경될 수 있음

4. 부지선정 및 심사기준

○ 부지 선정방법 : 법적 제한사항 또는 기타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군립장사시설 추진위원회 심의 의결로 결정

O 심사기준

연 번	분 야	심 사 내 용	비고		
1	주민동의	신청지역 주민의 동의율			
2	접 근 성	주변 교통여건, 진입도로 유무			
3	경 제 성	부지·지상물 보상 예상금액, 주요 도로와의 거리			
4	법령저촉	각종 법률에 의한 제한사항			
5	환 경 성	대상지 주변 생태훼손 가능성			
6	민원요소	집단민원발생 가능성			
7	개발용이성	부지확보 및 기반공사 용이성			
8	확 장 성	부지확장 가능성			
9	안 정 성	대상지 지형 및 재해에 대한 안전성			
10	사업용이성	신청지역 토지사용 승낙률, 보상협의			

5. 지역개발(인센티브) 지원계획

O 지원지역: 군립화장장을 중심으로 2km 이내에 연접해 있는 의령군 행정구역 내 행정마을

O 지원내용

구 분	지원기간	지 원 내 용	지 원 규 모
지역개발사업	준공 후 5년간	- 소득향상사업 지원 - 복지증진사업 지원	별도 제한규정이 없는 한 100억원 이내 (현금지원 불가)
운영권 제공		- 부대시설 운영권 제공	식당, 매점, 카페 등
일자리 제공	기본 5년간	- 기간제근로자 등 우선채용 기회 제공	채용인력에 따라 조정

※ 지원내용의 세부사항은 협약에 의해 변경 가능

- 지역개발사업의 종류

구 분	지 원 사 업
1. 소득향상사업	○ 농림업, 축산업 시설의 설치 ○ 상·공업 시설의 설치
2. 복지증진사업	○ 사회복지시설 설치○ 교육, 문화, 체육시설 설치○ 주거환경 개선사업○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3. 기타사업	○ 장학사업 등

6. 유의사항

- O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후보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.
- O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17조(묘지 등의 설치 제한)에 저촉되는 지역은 제외

7. 구비서류

- 1) 신청서 1부
- 2) 주민동의서 1부
- 3) 후보지 지번별 조서 1부
- 4) 토지사용 승낙서 1부
- 5) 읍·면장 검토 의견서 1부

붙 임 구비서류(서식) 각 1부.

【붙임 1】

의령군 군립화장장 건립후보지 신 청 서 세대 신 청 가 구/ 읍(면) 마을 마 을 명 인구수 명 대표자 집) 연 락 처 휴) 성 명 청 리 번지 읍(면) 신 총면적 m^2 ス] 역 외 필지 총 세대 중 주 민 찬 성 동의율 % 동의현황 (동의자) 세대 동의

붙임과 같이 마을 주민의 동의를 받아 의령군 군립화장장 건립후보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2023년 월 일

의령군 군립화장장 건립후보지 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의령군수 귀하

1. 주민동의서 1부 붙임서류 2. 건립후보지 지번별 조서 1부 3. 토지사용 승낙서 1부

[붙임 1-1]

의령군 군립화장장 건립후보지 신청마을 주 민 동 의 서

○ 군립화장장 건립후보지

- 위 치 : 읍·면 리 번지 외 필지

- 면 적 : m²

○ 주민동의율 : %

연 번	주 소	세대주 성명 (또는 세대원)	서명 또는 날인	비고

상기와 같이 의령군 군립화장장 건립후보지 신청에 따른 주민동의서를 제출합니다.

2023년 월 일

의령군 군립화장장 건립후보지 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의령군수 귀하

[붙임 1-2]

의령군 군립화장장 건립후보지 지번별 조서							
건립후보지	보지 읍·면 리 번지외 필지, 총면적						m²
○ 지번별 조서							
드기 차게 5	,ì	-) 17	다 경 (²)	.	지소유지	\	u) ¬
토지 소재기	`	지목	면적(m²)	주 소		성 명	비고
리	번지						
	와 같ㅇ 합니다		군 군립화장	장 건립후보지	지번별	조서를	
			2023년	월 일			
의령군 군립화장장 건립후보지 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							인)
의령군수 귀하							

[붙임 1-3]

의령군 군립화장장 건립후보지 **토지사용 승낙서**

- 1. 사용목적 : 군립화장장 건립부지
- 2. 재산의 표시

토지 소재지		지목	면적(m²)	토지소유/	비고	
도시 도시	1/1	기둑	[변역(III <i>)</i>	주 소	성 명	P1 -14
중}- 임	계					
리	번지					

상기 토지는 본인 소유로서 아래 사용자에게 의령군 군립화장장 건립부지로 사용을 승낙하며, 토지매매 가격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에 매각하겠음.

첨 부 : 인감증명서 1부(용도 : 토지사용 승낙용)

2023년 월 일

승낙자 성 명: (인감날인)

주민등록번호 : 주 소 :

사용자 성 명:의령군수

주 소 :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

의령군수 귀하

[붙임 2]

의령군 군립화장장 건립후보지 읍·면장 검토 의견서							
건립후보지	<u> </u>	면 리	번지	외	필지,	총면적	m²
후 보 지 주변현황							
접 근 성							
지역여론							
신 청 서 검토결과							
종합의견							
,	상기와 같이	승.`	면 검토 의	리견을 ·	제출합	니다.	
		2023년	월	일			
					읍·면	장 (직인)	
의령군수 귀히	5}-						

「의령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의령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의령군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3년 6월 5일

의 령 군 수

1. 개정이유

서부권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, '알 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,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자 함

2. 주요내용

- 『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』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(조례 안 제1조~제9조, 제11조~제14조, 제20조)
 - (현행) "사용료" (개정) "임대료"

-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위치 구체적 명시(조례 안 제3조)
 - 서부권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명칭과 주소 추가
- 임대농업기계 운반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 신설(조례 안 제15조)
-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「전자정부법」조항 정비(조례 안 제10조)
- 『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』에 따른 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 (조례 안 제16조)

3. 개정조례안: 붙임

4. 의견제출

- 가.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5일까지(21일간)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령군수(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.
 -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이유)
 -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법인명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처

- 주 소: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9동길 30, 의령군수 (참조: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)(우 52139)
- 전화번호: 055-570-4261(팩스 570-4229)
- 전자우편: molla27@korea.kr
- 제출방법: 직접방문, 전화, 팩스, 전자우편 등

5. 기타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농기계지원 담당(☎055-570-4261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붙임 1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 - 2. 의령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[붙임1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	례	명	:	「의령군 농업기계	임대사업소	설치 및 조	조례」일	쿠개정조례안

O 성명(단체명):

O 주 소:

O 전화번호:

	찬성여부				-21
입법예고 내용	찬성	반대	의	견	비고

[붙임2]

의령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3-25호

의령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의령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제1조 중 "「농업기계화촉진법」"를 "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"로, "농업경영 개선."을 "농업경영개선 및"으로 한다.
- 제2조제1호 중 "의령군"을 "의령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- 3. "임대료"란 농업기계를 사용한 대가로 부과·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- 제3조(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 및 명칭) ①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,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 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(이하 "임대사업소"라 한다)를 설치하고,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위하여 현장 사업소를 둘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임대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의령 농업기계 임대사업소: 의령군 의령읍 의합대로 69
 - 2. 동부권 농업기계 임대사업소: 의령군 부림면 한지31길 6
 - 3. 중부권 농업기계 임대사업소: 의령군 정곡면 법정로1길 6
- 4. 서부권 농업기계 임대사업소: 의령군 칠곡면 진의로 2210-6 제4조제1호 중 "사용료 징수"를 "임대료 부과·징수"로 한다.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5조(운영 및 관리) ① 의령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.
 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소에 관리책임자와 관리요원을 둘 수 있으며,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(이하 "관리책임자"라 한다)이 되고, 관리요원은 농업기계 업무 담당자와 농업기계 정비요원이 된다.
 - ③ 관리책임자는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- 제7조제1항 중 "(이하 "사용자 "라 한다)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군수와"를 "(이하 "임차인"이라 한다)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"으로 하고, 같은 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② 임차인은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. 제8조의 제목 "(임대 기간 및 기준)"을 "(임대 기준 및 기간)"으로 하고, 같은 조제1항 중 "농업기계의 임대기준은"을 "농업기계는"으로 "임대차계약 순위에"를 "임대차 계약 순서에"로 "하고, 사용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."를 "한다."로하며, 단서를 삭제한다.

제8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4항 및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제3항 중 "사용기간"을 "임대기간"으로, "입고 및 출고"를 "출고 및 입고"로 하며, 제4항(종전의 제2항) 중 "의령군내"를 "군 내"로 하고, "토지를 소유하면서 자가 영농하는 자에 한정하여"를 "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군 내에 있는 농업인에게"로 하며,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임차한 농업기계"를 "농업기계"로, "임대차계약"을 "임대차 계약"으

로 하고,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"사용자가"를 "임차인이"로 "임대기종의 농업용기계"를 "임대 기종의 농업기계"로 "단, 사용자가 보유한 농업용기계"를 "단, 임차인이 보유한 농업기계"로 한다

- ② 농업기계 임대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임차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제9조의 제목 "(사용료)"를 "(임대료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"사용료"를 "임대료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사용중인 임차인이 제8조제1항"을 "사용 중인 임차인이 제8조제2항"으로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자가"를 "자가 농업기계를"로, "사용료"를 "임대료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.
 - ① 군수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징수하며, 임대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.
 - ④ 임대료 징수 및 처리절차 등은 「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또는 「의령군 수입증지 조례」를 따른다.
- ⑤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.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- 제10조(임대료의 감면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.
 - 1. 전액 감면: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2. 100분의 50 감면
 - 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
 - 나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 - 다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로

서 직접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

-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야 한다. 다만, 「전자정부법」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라 신청인이 동의하 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.
- 제11조의 제목 "(사용료의 반환)"을 "(임대료의 반환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사용료가"를 "임대료가"로, "사용료의"를 "임대료의"로 한다.
-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항에 따른 임대료의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"사용료"를 각각 "임대료"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"고장유무"를 "고장 유·무"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"해당 할"을 "해당할"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"농업기계를 임대 받은 자가 농업용"을 "임차인이 농업기계를 농업용"으로 한다.

제15조를 제6조로 하고,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5조(농업기계 운반 대행) ① 군수는 농가에서 직접 운반이 어려운 농업기계에 대하여 운반 대행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운반 대행 대상 농업기계 기준은 군수가 정하며, 운반비는 별표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다.
 - ③ 임대 농업기계 운송은 운반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 또는 농로에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 - ④ 임대 농업기계 운반 대행을 신청할 경우에는 운반 가능 여부 및 일정 등을 관리요원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, 1일 농업기계 운송 및 횟수가 많을 경우 예약 신청자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6조(종전의 제15조) 중 "농업기술센터소장은"을 "관리책임자는"으로 한다.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16조(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)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1. 사업계획의 적합여부
 - 2. 농업기계 임대료 부과 · 징수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- 3. 농업기계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
 - ② 위원회의 기능은 「농업산·학협동심의회 규정」에 따른 의령군 농업산 학협동심의회가 대행한다.

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를 삭제한다.

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임대사업소의"를 "관리책임자는 임대사업소의" 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"사용료"를 "임대료"로 한다.

별표의 구분란 중 "임대비"를 "임대료"로 하고, "1일 사용료"를 "1일 임대료 (운반비)"로 하며, 비고란 중 "사용료"를 "임대료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농업기계 기종별 임대료 징수기준(제9조 관련)

(단위:원/1일)

구 분	규 격	구입가격	I일 임대료(운반비)	비고	
	자주 및 부착형	400만원 미만	10,000원		
	11	400만원 ~ 1,000만원 미만	20,000원		
전 기종	11	1,000만원 ~ 2,000만원 미만	30,000원	기 보유기종과 동일한 기	
및 작업기	11	2.000만원 ~ 종을 추가 구입			
임대료	11	3,000만원 ~ 4,000만원 미만	50,000원	임대료를 부과한다.	
	II	4,000만원 ~ 5,000만원 미만	60,000원		
	II	5,000만원 이상	70,000원		
O Hrni	근거리	10km 이내	20,000원		
운반비	원거리	10km 초과	30,000원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 혅 햀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「농업기계</u> 제1조(목적) ----- 「농업기계 화촉진법 , 제8조 및 제8조의2에 화 촉진법 _ -----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 산성 향상, 농가의 농업경영개선. ----- 농업경영개선 및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령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-----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임대사업"이란 의령군이 농업 | 1. ----- 의령군(이하 "군"이 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 라 한다)-----업을 말한다. 2. (생략) 2. (현행과 같음) 3. "농업기계 임차 사용료"(이하| 3. "임대료"란 농업기계를 사용한 대가로 부과·징수하는 요금을 "사용료"라 한다)란 의령군 농업기 계 임대사업소(이하 "임대사업 말한다. 소"라 한다)에서 농업인이 농업 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. 제3조(임대사업소의 명칭과 위치) |제3조(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 및 명칭) ① 농업기계화를 촉진하 임대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고,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 시켜 농 각 호와 같다.

- 의령읍 소재지 내
- 2. 동부권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: 부림면 소재지 내
- 3. 중부권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: 업소를 둘 수 있다. 정곡면 소재지 내

제4조(임대사업소의 기능) 임대사업 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 다

- 에 관한 사항
- 2. ~ 4. (생 략)
- 제5조(운영 및 관리) ① 임대사업소 제5조(운영 및 관리) ① 의령군수(이 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군비로 한다.
 - 의령군수(이하 " 군수 " 라 한다)가 | 한다.

1. 의령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: 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 령군 농기계 임대사업소(이하 "임 대사업소"라 한다)를 설치하고, 효율 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현장 사

-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임대사업 소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의령 농업기계 임대사업소: 의 령군 의령읍 의합대로 69
- 2. 동부권 농업기계 임대사업소: 의령군 부림면 한지31길 6
- 3. 중부권 농업기계 임대사업소: 의령군 정곡면 법정로1길 6
- 4. 서부권 농업기계 임대사업소: 의령군 칠곡면 진의로 2210-6

| 제4조(임대사업소의 기능) -----

- 1. 농업기계 임대 및 사용료 징수 | 1. ----- 임대료 부과· 징수----
 - 2. ~ 4. (현행과 같음)
- 하 "군수"라 한다)는 임대사업소 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 ②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는 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 야 한다.
 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임대사

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, 농업기술 센터소장은 임대사업소의 운영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·관 리 한다. 다만. 전산처리를 할 경 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.

제6조(관리요원) ①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책임 관리자, 담당자, 수리요원을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책임 관리자와 담당자는 의령군농업기술센터 직원 또는 수리요원이 업무를 겸한다.

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(이하"사용자"라 한다)는 별 지 제1호서식으로 군수와 농업기 지 제1호서식에 따라 ------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 다.

<신 설>

② 관리요원은 안전사고 예방을

③ 임대사업소 운영 책임자는 농 업소에 관리책임자와 관리요원을 둘 수 있으며, 관리책임자는 농 업기술센터소장(이하 "관리책임 자"라 한다)이 되고, 관리요원은 농업기계 업무 담당자와 농업기 계 정비요원이 된다.

> ③ 관리책임자는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.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 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. <삭 제>

제7조(임대차 계약 및 교육) ① 농업 제7조(임대차 계약 및 교육) ① ---

--(이하 "임차인"이라 한다)는 별

② 임차인은 농업기계 임대차 계 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.

(3) ---

위하여 농업기계의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 교육 후 출 고 하여야 한다.

제8조(임대 기간 및 기준) ① 농업 기계의 임대기준은 임차인의 형평 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제7조제1 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순위에 따라 출고하되, 농가당 1대를 원칙 으로 하고, 사용기간은 2일 이내 로 한다. 다만, 임차 신청 대기자 가 없을 경우 그 사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② 군수는 <u>의령군내</u>에 주소를 두 거나 <u>토지를 소유하면서 자가 영</u> <u>농하는 자에 한정하여</u> 농업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.

- ③ <u>사용기간</u>은 농업기계의 출고일 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 되 <u>입고 및 출고</u>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.
- ④ 관리요원은 출고대상 농업기계 의 이상 유무를 확인·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.

제8조(<u>임대 기준 및 기간</u>) ① <u>농업</u>
기계는
<u>임대차 계약 순서에</u>
<u>한다</u> . <u><단서 삭제></u>
② 농업기계 임대기간은 2일 이내
로 한다. 다만, 임차 신청 대기자
가 없을 경우 임대기간을 연장할
<u>수 있다.</u>
<u>④</u> <u>군 내</u>
<u>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</u>
경작지가 군 내에 있는 농업인에
<u>게</u>
③ 임대기간
<u>출고 및 입고</u>
<u>⑤</u>

- ⑤ 임차인이 <u>임차한 농업기계</u>를 사용 후 지정한 기한 내에 <u>입고</u>하 지 않는 등 <u>임대차계약</u> 조건을 이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를 제한할 수 있다.
- ⑥ 사용자가 동일 임대기종의 농업용기계를 보유한 경우 임차를 불허한다. 단, 사용자가 보유한 농업용기계가 고장일 경우는 임차를 허가할 수 있다.
- 제9조(사용료) ①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.
 - ② <u>사용료</u>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체결 시까지 납부하여 야 한다. 다만, 농업기계를 <u>사용중</u> 인 임차인이 제8조제1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연장 할 경우에는 후 납할 수 있다.
 - ③ 제10조에 해당하는 <u>자가</u>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 수기준에 따른 <u>사용료</u> 전액을 납 부하여야 한다.
 - ④ 사용료 징수와 수입금 처리절차 등은 「의령군 예산 및 기금의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또는 「의령군 수입증지 조례」를 따른다.

<u>⑥</u> <u>농업기계</u>
임대차 계약
<u>현네시 계국</u>
⑦ 임차인이 임대 기종의 농
업기계
단, 임차인이 보유한 농업
기계
제9조(임대료) ① 군수는 임차인에
<u>게 임대료를 징수하며, 임대료의</u> <u>징수</u> 기준은 별표와 같다.
<u>영기 기교도 글파퍼 됩니.</u> ② <u>임대료</u>
<u>사용 중</u>
인 임차인이 제8조제2항
·.
③ <u>자가 농업기</u>
계를
<u>임대료</u>
· ④ 임대료 징수 및 처리절차 등은
「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
또는 「의령군 수입증지 조례」를
<u> 따른다.</u>

- 유류대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. 단, 임차인이 직접 운반하지 못하 는 농업기계는 임대사업소에서 운 반할 수 있다.
- ⑥ 제5항의 임차인이 직접 운반하 지 못하는 농업기계는 의령군농업 기술센터소장이 지정 고시하고, 운반을 필요로 하는 경우 출고일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) 제10조(임대료의 감면) ① 군수는 ① 군수는 다음의 제1호부터 제3 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할 수 있다. 에는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고, 제4호에 해당될 경우는 면제할 수 있으며, 감면 또는 면제 를 받고자하는 사용자는 감면대상 |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군 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 른 수급권자
 - 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 인
 - 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 공자로서 자가 영농에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
 - 4.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

⑤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⑤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.

<삭 제>

-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
- 1. 전액 감면: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
- 2. 100분의 50 감면
 - 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
 - 나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 - 다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 가유공자로서 직접 영농에 사 용하고자 하는 경우
-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 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. 「전자

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정부법 | 제8조 및 제36조에 따 라 민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 보 공동이용으로 갈음한다.

제11조(사용료의 반환) ① 군수는 납부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 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 여야 한다.

- 1. ~ 3. (생략)
-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사용료 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와 같다.
- 1.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: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사용 료
- 2. 제1항제3호의 경우: 사용하지 않 은 일수의 사용료

제12조(농업기계의 반납) ① (생 략)

- ② 농업기계를 반납할 때에는 고 장유무에 대하여 관리요원의 확인 을 받아야 한다.
- 제13조(계약 취소 및 사용정지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계약을 취소하거나 사 용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.

정부법」 제38조 및 제42조에 따 ② 제1항 각 호의 증명서는 「전 라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 보 공동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11조(임대료의 반환) ①
<u>임대료가</u>
임대료
의
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의 반환
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
<u>임</u> 대
显
2
<u>임대료</u>
제12조(농업기계의 반납) ① (현행과
같음)
② <u>고</u>
<u>장 유·무</u>
제13조(계약 취소 및 사용정지) ①
<u>해당할</u>

- 1. 농업기계를 임대 받은 자가 농 1.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-----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
- 2. · 3. (생략)

②・③ (생략)

<신 설>

센터소장은 임대사업소의 효율적 인 운영을 위하여 연간 사업계획 은 당해사업 전년도 12월에, 사업은 영결과는 당해사업 다음해 1월에 군

- 2. · 3. (현행과 같음)
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 제15조(농업기계 운반 대행) ① 군 수는 농가에서 직접 운반이 어려 운 농업기계에 대하여 운반 대행 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운반 대행 대상 농업기계 기준은 군수가 정하며, 운반비는 별표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다.
 - ③ 임대 농업기계 운송은 운반차 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 또는 농 로에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이 를 조정할 수 있다.
 - ④ 임대 농업기계 운반 대행을 신 청할 경우에는 운반 가능 여부 및 일정 등을 관리요원과 사전 협의해 야 하며. 1일 농업기계 운송 및 횟 수가 많을 경우 예약 신청자를 제 한할 수 있다.

제15조(운영계획 및 보고) 농업기술 제6조(운영계획 및 보고) 관리책임 자는 -----

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6조(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) 제16조(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령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 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 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(性)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 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 터소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.
-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, 농축산유통과장, 농업기술과장으 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의령군의 회 의원 1명, 의령군 농기계연구회 대표, 여성 1명이상을 포함한 농업 관련단체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 <u>또는</u> 임명한다.
- ⑤ 위원회의 업무보조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농기계지 원담당으로 한다.

제17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 | <삭 제> 년으로 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

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 적인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 (이하 "위워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1. 사업계획의 적합여부
- 2. 농업기계 임대료 부과・징수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- 3. 농업기계의 효율적 관리 및 운 영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
- ② 위원회의 기능은 「농업산·학 협동심의회 규정」에 따른 의령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대행한다.

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 으며 보궐 위촉된 후임위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- 1. 품위손상, 장기불참(무단 3회이 상)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 합 하다고 인정되는 때
- 2.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 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- 3.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

제18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·의 결한다.

- 1. 사업계획의 적합여부
- 2. 농업기계 임대료 부과 · 징수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3. 농업기계의 효율적 관리 및 운 영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

제19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회의 | <삭 제>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 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정기회의는 전년도 임대사업 운영결과 보고와 당해 연도 사업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. 매년 1월에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<삭 제>

개최한다.

-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 닌 위원은 「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20조(비치대장) <u>임대사업소의</u>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 을 비치하고 활용 하여야 한다.
 - 1. · 2. (생략)

정한다.

3.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<u>사용료</u> 징수대장: 별지 제5호서식 <u>제21조(시행규칙)</u>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

제20조(비치대장) <u>관리책임자는 임대사</u>
업소의
 1.·2. (현행과 같음) 3 임대료
 <삭 제>